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 ○ 상위법으로 명시된 중복조항 삭제 및 제25회 기관장과의 합의사항 반영

3. 주요내용
 ○ 상위법인 『지방공무원복무규정』에 명시된 중복조항 삭제【제8조(출장공무원)】【제17조(휴가의종류)】【제18조(연가일수)】【제22조(공가)】【제23조제2항(출산휴가)
 ○ 제25회 직협과 기관장과의 협의회 합의사항인 특별휴가범위확대 ⇒ 직원의 자녀가“병역법”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
 ○ 【제23조제12항(포상휴가)】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4. 참고사항
 ○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제59조 및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의3제1항
 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8136(2017.9.6.)〕
 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3567(2017.9.28.)〕
 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〔예고기간 : 2017. 9. 7. ~ 2017. 9.27.(21일간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에 명시된 항목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5개 항목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하였으며,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사항 반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,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중복조항으로 명시된 제8조의 『출장공무원』, 제17조『휴가의 종류』등 5개 항목을 삭제하고, 제25회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회 합의사항인『특별휴가』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, 포상휴가 대상을 구체화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.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,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, 특히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사항인 특별휴가의 범위확대와 포상 휴가 대상을 구체화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